

도로명 부여 고시

우리구 신설된 도로에 대한 도로명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도로명 부여(도로구간 포함)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5. 10. 14.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- 고시일 : 2015. 10. 14.
- 고시방법 : 구보, 구홈페이지, 게시판 등
- 고시내용 : 신설 도로명 부여
- “가재울미래로” 붙임조서 와 같음
- 도로명의 변경 요건 및 절차

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신청	신청을 받은 날부터 ⇒ 10일 이내	주민의견 수렴 공고	주민의견수렴 한 날부터 ⇒ 30일 이내	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	심의 마친 날부터 ⇒ 10일 이내
주소사용자의 5분의1 신청		14일 이상		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	

공고 및 신청인 통보	공고한 날부터 ⇒ 30일 이내	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	동의 얻은 날로부터 (동의 생략 포함) ⇒ 10일 이내	고시 및 신청인 통보
		주소사용자의 1/2 이상		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
. 심의 결과 . 내용 및 절차		서면 동의를 못 받은 경우	동의 만료일부 ⇒ 10일 이내	공고 및 신청인 통보
		주소사용자의 1/2 이하		결과 통보

※ 도로명 변경은 최초 도로명 고시일 3년 경과 후 가능함.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홈페이지(<http://www.sdm.go.kr>)를 참고하거나 서대문구청 지적과(☎330-1078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서대문구 도로명(도로구간 포함) 부여 조서 및 도면 1부.